

제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611 |
|----------|-----|

제출년월일 : 2000. 5
제출자 : 제천시장

1. 제안사유

-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 중 불필요사항을 삭제하고 위원수의 적정조정으로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시정조정위원수(당연직)의 조정 : 9명 → 10명
 - 산업건설국의 주무과장인 농업축산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
- 불필요한 결정사항 삭제
 - 국공유재산의 대부심사
- 대행하는 위원회 추가
 - 제천시상표권심사위원회

3. 근거법령 : 해당없음

- 첨부 : 1. 제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3. 참고자료

제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당연직위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담당관, 공보 담당관, 자치행정과장으로”를 “당연직위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기획담당관, 공보담당관, 자치행정과장, 농업축산과장으로”로 하고
동조 제4항중 “종료함으로써 해촉한다”를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로 한다.

제3조중 “제5호”를 삭제하고, 제14호중 “기타시장의 결심을 요하는”을 “시정”으로 한다.

제4조 제3항중 “간사장”을 “간사”로 하고

동조 제4항중 “간사장은”을 “간사는”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안설명 및 의견의 청취) ①안건을 제출하는 실과소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사유, 개요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별표)중 “문화관광”, “제천시상표권심사위원회”, “제천시캐릭터상표권에 관한 조례 제10조”를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p> | <p>제5조(제안설명 및 의견의 청취) ① 안건을 제출하는 실과소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사유, 개요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p> <p>②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p> |

신 구 조 문 대 비 표

| 현 행 | | | 개 정 안 | | |
|---|-------------------------|---|---|----------------|---|
| [별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 (제3조 11호 관련) | | | [별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 (제3조 11호 관련) | | |
| 분야별 | 위원회명 | 근거규정 | 분야별 | 위원회명 | 근거규정 |
| 기획 | 1. 기획예산위원회 | <input checked="" type="radio"/> 제천시기획업무규칙 제7조 | | 1. | <input type="radio"/> |
| 자치행정 | 1.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 <input checked="" type="radio"/> 제천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 보상조례 제23조 | | 1. | <input type="radio"/> |
| | 2. 제안심사위원회 | <input checked="" type="radio"/> 제천시지방공무원제안규칙 제12조 | | 2. | <input type="radio"/> |
| 건전생활 체육 | 1. 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 위원회 | <input checked="" type="radio"/> 제천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 기금관리운용조례 제4조 | | 1. | <input type="radio"/> |
| | | | | | <input type="radio"/> |
| 회계 | 1. 공유재산심의위원회 | <input checked="" type="radio"/>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 | 1. | <input type="radio"/> |
| 사회복지 | 1. 영세민생활안정기금관리 심사위원회 | <input checked="" type="radio"/> 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제7조 | | 1. | <input type="radio"/> |
| (신 설) | (신 설) | (신 설) | 문화관광 | 1. 제천시상표권심사위원회 | <input type="radio"/> 제천시캐릭터상표권에관한 조례 제10조 |

참 고 자 료

제2조(구성)

○ 시정조정위원수 조정 : 9명 → 10명(증 1명 : 농업축산과장)

⇒ 각국의 주무과장 포함 : 자치행정과장(기포함) 농업축산과장

제3조(결정사항)

5. 국공유 재산의 대부심사

⇒ '99. 10. 22 삭제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6조(간사장)

① 간사장 → 간사

⇒ 효율적 추진

별표 : 대행하는 위원회

○ 제천시상표심사위원회 추가

⇒ 제천시캐릭터상표권사용에관한조례 공포(2000. 3. 20)